

서울특별시 성북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행정기획위원회(도시안전과)

의안번호	제 97 호
제 출 자	임현주 의원 외 13 명 (2023. 02. 09.)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검 토	전문위원 정 진 만

1. 제안이유

폭염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폭염 피해에 대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 다.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재난 도우미 운영 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 다. 입법예고 : 2023. 02. 09. ~ 2023. 02. 14.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자연환경의 변화로 기상이변이 나타남에 따라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폭염¹⁾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국 64개 시군구, 서울특별시 4개 자치구(노원구, 은평구, 양천구, 마포구)에서 제정 시행 중임

○ 최근 3년 폭염 특보 발효 빈도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폭염	주의보	16일	19일	17일
	경보	5일	18일	5일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1조(목적)부터 제2조(정의)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1) 폭염의 한자는 햇볕쪼일 폭(暴), 불탈 염(炎)으로 매우 더운 날씨를 말하는데, 특정 온도를 기준으로 기상청에서는 폭염 주의보와 폭염 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이면서 이 더위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 주의보, 낮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이면서 이 더위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 경보가 발령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햇볕을 쬌는 것만으로도 인체에 해가 될 수 있으므로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 7월 8일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에서 6월1일~7월7일 기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평균 최고기온이나 폭염·열대야 일수에서 올해가 지금까지 가장 더운 여름이 닥친 해로 꼽히는 1994년과 2016년, 2018년 3개 해의 기록을 모두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평균적으로 7~8월에 시작되었던 폭염이 6월부터 시작되었다. 기상학자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이 일찍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폭염은 더 자주, 강력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열대야 : 일 최저 기온이 25° C 이상인 날. 즉, 하루 종일 25° C 이상인 날

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구민의 책무로 구에서 제공하는 폭염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음.

- 안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은 폭염대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종합계획에는 폭염 상황 관리 및 대응체계구축, 예방 및 폭염 저감 조치, 무더위쉼터, 폭염취약계층 지원 및 취약시설물 안전 관리, 구민행동요령, 예방 홍보 등 폭염피해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음.
- 안 제6조(재난도우미 운영)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전담조직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통장, 지역자율방재단원, 사회복지사, 건강보건전문인력 등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7조(지원 사업)부터 안 제8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등)까지 폭염 저감조치 사업,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 사업, 폭염취약계층 보호사업, 냉방용품 지원 사업 등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 및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건강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9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 안 제10조(협력체계 구축)부터 안 제12조까지(관리·감독)까지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및 교육·홍보, 폭염취약 시설 및 계층에 대한 관리부서의 지도·점검의 실시 의무를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2018년 9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하여 자연 재난으로 규정된 ‘폭염’에 대하여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하여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법 제4조2)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 2)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